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86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홍기원 · 이언주 · 김태년
서미화 · 윤종균 · 윤후덕
한민수 · 이병진 · 최혁진
전현희 · 신영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 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제7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26조제4항 단서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 서 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